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-177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0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(주)핀다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3.6.16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◦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·광고

\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의2제6항제4호, 동법 시행  
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, 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2호